

1. 개정이유

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,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8752호, 2022. 1. 11. 공포, 2022. 7. 12. 시행)됨에 따라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심의위원회 구성(안 제8조 신설)

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하고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,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요건을 갖춘 사람 등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

나. 사용자에게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(안 제8조의2 신설)

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영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영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1호”를 “법 제13조제10의2호”로 한다.

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5조제1항제4호”를 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,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한다.

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원장이 위촉한다.

1.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
2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
3.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

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, 경제 · 경영,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나. 노동, 경제 · 경영,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

다. 금융 관련 기관에서 퇴직연금, 자산운용, 금융상품평가 및 위험 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
제8조의2(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)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14조(종전의 제13조) 중 “제9조”를 “제10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	정	안
제3조(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) ① 「 <u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</u> 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~ 3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제3조(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) ① <u>법 제13조제10의2호</u> ----- ----- ----- -----.		
제4조의2(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)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4조의2(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) 「 <u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</u> 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제4호----- -----.		
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제8조(심의위원회 구성) ① <u>법 제21조의2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</u> 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한다. ② <u>심의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위원장이 위촉한다.</u>		

1.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
2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
3.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
 - 가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서 노동, 경제 · 경영, 금융 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나. 노동, 경제 · 경영,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소속되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 - 다. 금융 관련 기관에서 퇴직연금, 자산운용, 금융상품 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

<신 설> 제8조 ~ 제12조 (생략) 제13조(규제의 재검토)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9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	③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제8조의2(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 운용방법 제시방법)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영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제9조 ~ 제13조 (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) 제14조(규제의 재검토) ----- ----- 제10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-